

瑞山市女性發展福祉基金設置及運用條例案

# 審 查 報 告 書

2000. 10.19  
總務委員會

## 1. 審 查 經 過

- 가. 提出日字 : 2000. 10. 6
- 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- 다. 回附日字 : 2000. 10. 9
- 라. 上程日字 : 2000. 10. 19

## 2. 提 案 說 明 要 旨 (提 案 說 明 : 社 會 女 性 福 祉 課 長 安 光 來)

### 가. 制 定 理 由

-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의 역할증대와 사회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, 여성발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의 권한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의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,
- 또한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기 설치 운영하여 온 「서산시모자복지기금」을 새로이 제정하는 「서산시여성발전복지기금」에 통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.

### 나. 主 要 骨 子

-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서산시여성발전복지기금」을 설치함(안 제1조).

- 기금조성재원을 시 출연금,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, 기타 수입금으로 정함(안 제3조).
- 기금의 용도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, 여성단체사업,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용, 모자가정의 주택임차 및 자립사업 용자, 기타 여성발전과 모자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하도록 정함(안 제3조).
- 기금의 계좌를 설치 관리하도록 함(안 제4조).
-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「서산시여성발전복지기금관리위원회」에서 심의토록 함(안 제5조 내지 제7조).
- 기금관리 공무원을 정함(안 제8조).
-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,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,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등의 운용계획을 정함(안 제9조).
-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(안 제11조).

### 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여성의 역할증대와 사회적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.
- 여성의 권한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상 재정적 뒷받침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설치 되어 있는 모자복지기금을 새로이 설치하는 서산시여성발전복지기금에 통합하여 운용코자하는 제정 조례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6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161호
의 결 년 월 일	2000. . . ( 재 회 )

**서산시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**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연월일	2000년 10월 6일

# 서산시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의안 번호	16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0. 6.
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## 1. 제정이유

-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의 역할증대와 사회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, 여성발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의 권한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의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,
- 또한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기 설치 운영하여 온 「서산시 모자복지기금」을 새로이 제정하는 「서산시여성발전복지기금」에 통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 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서산시여성발전복지기금」을 설치함 (안 제1조).
- 나. 기금조성재원을 시예산 출연금,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, 기타수입금으로 정함 (안 제2조).
- 다. 기금의 용도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, 여성단체사업,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, 모자가정의 주택임차 및 자립사업융자, 기타 여성발전과 모자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하도록 정함 (안 제3조).
- 라. 기금의 계좌를 설치 관리 하도록 함 (안 제4조).

마.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「서산시여성발전복지기금관리위원회」에서 심의토록 함 (안 제5조 내지 제7조).

바. 기금관리 공무원을 정함 (안 제8조).

사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,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,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등의 운용계획을 정함 (안 제9조).

아.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(안 제11조).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련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5조, 제133조
- 지방재정법 제110조, 동법시행령 제156조
-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
- 모자복지법 제2조

#### 나. 예산조치

- 기금조성목표액 : 8억(기조성액 3억, 미조성액 5억)
- 조성기간 : 2000년 하반기 ~ 2004년(5년간)
- 재 원 : 시출연금( 연 1억원씩 조성 적립)

다. 입법예고 : 2000. 5. 20. 결과 - 해당사항없음

# 서산시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산시여성발전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금의 조성)**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출연금
2.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3. 기타 수입금

**제3조(기금의 용도)**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.

1.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
2. 여성단체사업의 지원
3.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
4. 모자가정의 주택임차 및 자립사업 융자금 지원
5. 기타 여성발전과 모자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

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.

**제4조(기금의 운용·관리)**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** ①기금의 조성 및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여성발전복지기금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④위원은 사회산업국장, 사회여성복지과장, 시의회 의원 1인, 서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, 여성발전 및 복지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⑤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여성복지담당 이 된다.

**제6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기금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의 조성·운용·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
2.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
3.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

**제7조(회의)**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.

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8조(회계공무원 등)**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사회여성복지과장
2. 기금출납원 : 여성복지담당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9조(기금의 운용계획)** ①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**제10조(실비변상)**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발전분야 지원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** 다음 각 항의 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.

- ① 서산시모자복지위원회설치운용조례
- ② 서산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

**제3조(경과조치)** ① 이 조례 시행전에 서산시모자복지기금에서 집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산시모자복지기금의 자산은 이 기금에 이관한다.